



개정된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내용과 산재은폐

—
신혁순 노무사 | 032-555-4852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전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 및 유족급여신청 절차를 밟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의무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최초요양신청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관할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별도의 보고절차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즉,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 있거나 질병이 발병되는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발생 개요, 원인, 재발방지 계획 등을 기재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로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시에 발생한 사고,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법에 의해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금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내용이다.

질병발생에 대한 보고시기 유념해야

개정법에서 보고의무가 있는 것은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의 경우인데 재해발생일 당일은 제외하고 재해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3일 이상을 말하며 법정공휴일 및 휴무일은 여기에 기산되므로 1개월의 산정에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일 단순 재해경위가 명확한 재해의 경우 즉 추락, 끼임, 협착, 타박 등의 사고는 업

무상 재해가 명확하여 보고시점을 명확히 알 수 있으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불명확한 질병발생의 경우는 보고를 어느 시기에 하여야 하는 지 알 수가 없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도 기준을 마련하였다.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직업병에 대하여는 그 자체가 제 상병 진단일이 최초요양신청일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한 제 기간이 신청일로부터 길어지기 때문에 위 보고기간을 초과할 수도 있는 바, 이러한 질병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 신청 상병(질병)에 대하여 요양승인 처분을 한 때부터 기간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또한 사고가 업무상에 의한 것인지 혹은 근로자 순수 사적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인지 불명확한 경우에도 위의 경우처럼 최종 승인처분이 난 때를 기산점으로 보면 된다. 보고 방법은 전자문서,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다.

공상처리에 의한 산재은폐 회사에 '독' 될 수도 있어

일부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당사자 간 합의로 적법한 산재절차가 아닌 공상처리에 의하거나 또는 편법에 의한 건강보험으로 치료케 함으로써 산업재해 사실을 숨기는 일들이 일부 있다. 사실 산재은폐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회사 사정에 의할 수도 있고 재해근로자 본인이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상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당장어야 공상에 의해 치료케 한다 해도 이후 재해근로자 본인이 불리하다고 판단, 심정변화로 사고일로부터 3년 내에만 청구한다면 정상적으로 산재보험

처리가 될 수 있는데 회사는 그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및 법적 처벌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산재사실을 숨기게 하는 데에는 제도적 요인도 있다. 건설공사의 경우 환산재해율의 부담,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사업장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제도(산재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급여의 정도에 따라 일반요율을 증감하는 제도)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원래 산재보험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들로 하여금 사전에 산재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제도적 취지와는 달리 산재사실을 숨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재해근로자가 오히려 이러한 회사의 약점을 이용하여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일부 회사에서는 근로자 무서워서 사업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이번에 또 하나의 절차적 규제가 마련되었으니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해당 사실이 있을 때는 재해자에게 끌려가지 말고 정해진 법규에 의거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더 나은 산업복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재해사실에 대하여 위 절차에 의해 재해발생보고를 하였고 최종 산재 승인처분이 났을 경우 당해 사업장 재해율이 고용노동부 통계에 포함 되는데 만일, 면밀한 재해조사에 의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이 났을 경우 회사가 관할 노동청에 불승인처분 사실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통계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다.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으니 법 시행 초기에는 더욱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